

PRISM

MANUAL

1억원 미만 도입심의,
부처공통 표준 운영 매뉴얼

No.27

2016.11.28



PRISM

MANUAL

No.27

2016.11.28

1억원 미만 도입심의,
부처공통 표준 운영 매뉴얼



목차

I. 부처공통 표준 운영 개요	01
II. 부처공통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03
1. 심의위원	03
2. 신청접수	03
3. 심의평가	05
4. 결과제출	06
5. 변경승인	08
6. 구축포기	08
III. 관련 양식	09

부처공통 표준 운영 개요

- (목적)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도입심의 시행 시 각 부처마다 일관된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효율적인 심의 운영 및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처공통 표준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국과심 운영위, '15.10.30.)내에 1억원 미만 시설장비 도입심의 지원(부처공통 표준운영 기준 제공) 명시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하여 제정·고시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16.5.4) 제14조에 근거

- (도입)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는 구축(발주) 이전에 반드시 그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범부처 통합심의 대상에 해당되며, R&D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추진됨

* 과학기술전략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경우, 부처 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자체심의 대상에 해당되며, R&D사업관리와 연계하여 추진됨

* 국공립연구소, 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만 해당

<주체별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체계 구분>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금액 별 심의범위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미래창조과학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앙행정기관(연구관리전문기관)

■ (심의)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도입심의를 부처 또는 연구수행기관 마다 별도의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 따라 자체심의를 추진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미래부, '16.5.4)에 의거하여 기관 자율로 자체규정 제정

○ 심의 운영상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공하는 “부처공통 표준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부처 또는 연구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라 심의주체가 중앙행정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연구수행기관(자체장비심의위원회)로 구분되며, 심의결과는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NFEC 장비심의팀)에 제출해야 함

* 정부위탁연구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심의 주체별 1억원 미만 심의 운영체계 구분>

구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주최(주관)	중앙행정기관(연구관리전문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심의범위	해당부처(부처단위)	해당기관(기관단위)
심의대상	정부위탁연구사업의 예산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연구기관기본사업의 예산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

1 부처가 위탁, 협약하는 사업(ex. 산업부 “첨단 메디컬섬유 소재 개발 조직 염색 시스템”)

2 출연연 주요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ex.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신서비스 모니터”)

부처공통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심의위원

- (위원구성) 부처 또는 연구수행기관은 내부적으로 자체규정을 마련한 후 각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장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필요 시 분야별 다수의 분과구성도 가능함
 - 과제평가와 병행 시 평가위원회 내에 별도의 시설장비 전문가 1인 이상을 배정하여 시설장비만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수 있음
- (위원Pool) 부처 또는 연구수행기관 내에서 보유 중인 시설장비 전문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자 등의 인력DB를 활용하여 심의위원을 선발해야 하며, 필요 시 미래창조과학부(NFEC 장비심의팀)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2. 신청접수

- (신청시기) 사업공모 신청 시 시설장비 심의에 필요한 필수정보 등록을 요구하거나, 또는 협약 후 시설장비 심의요청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함

* 심의수요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심의 개최 및 심의일정 사전 안내 필요(부처별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기준 수립)

- (신청방법) 부처 또는 연구수행기관이 운영 중인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음

* 붙임1 참조, 부처별 자체규정에 의거함

※ 별도의 심의지원시스템이 없는 경우,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Cloud방식의 자체 심의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 (신청서류) 시설장비심의요청서, 사업계획서, 비교견적서* 등 총 3개가 필요함

* 타 제조사별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단, 단일견적서 제출 시 해당 사유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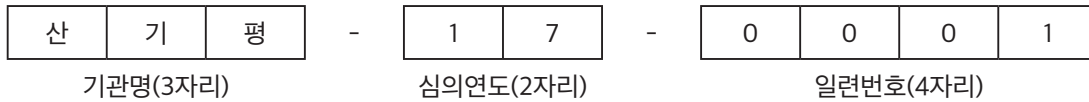
※ 시설장비심의요청서 양식은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람

■ (심의번호) 심의접수 시 아래처럼 6-2-4 비트 체계로 심의번호*를 부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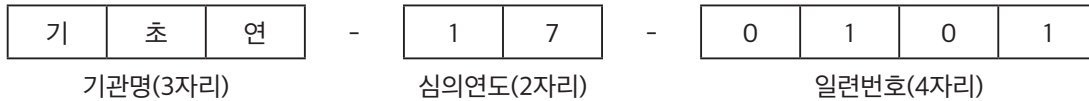
* 기관명(심의운영 주제 약칭), 심의연도(심의 개최년도 뒤 2자리), 일련번호(심의접수 순번)로 구성

○ 기관명을 국문으로 지정하는 경우,

ex) 부처/청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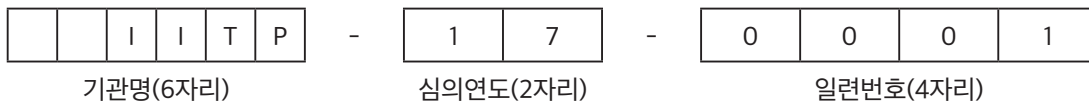


ex) 국공립연구소, 출연(연)/특정연구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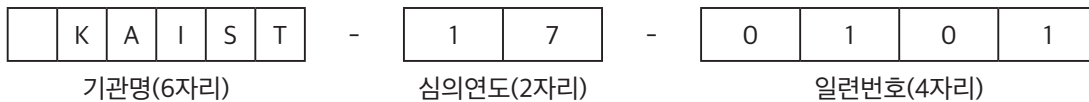


○ 기관명을 영문으로 지정하는 경우,

ex) 부처/청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ex) 국공립연구소, 출연(연)/특정연구기관 등



3. 심의평가

- (심의시기) 사업 협약 후 발주 이전에 시설장비 심의가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사업 평가 시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음

※ 공모과제의 경우, 사업 선정평가 시 시설장비 심의를 병행 실시하거나, 선정된 사업 내에 구축예정인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별도 심의 가능(자세한 사항은 부처별 자체규정에 의거함)

- (심의기준) 사업(연구)의 부합성, 시설장비의 활용성, 시설장비의 적정성, 시설장비운영의 계획성 등 총 4개를 심의 시 평가항목으로 고려해야 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점)
사업(연구)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사업(연구)과 부합하는가? • 사업(연구)기간을 고려할 때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시기가 적정한가? • 사업(연구) 수행에 꼭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인가? • 정부예산으로 구축이 타당한 연구시설·장비인가? 	30
시설장비의 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구)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연구시설·장비인가? • 시설장비 구축 또는 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기관)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인가? • 기관내 집적화 기능을 보유하고, 집적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시설·장비인가? • 명확한 근거(ex. 시장/수요조사 등)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활용도(율)를 제시한 연구 시설·장비인가? 	20
시설장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사양, 수량) 및 성능을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인가?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요구(책정)되지 않았는가? • 외산 시설장비 구매요청 시, 사전에 국산 시설장비 구매/제작을 검토한 연구시설·장비인가? 	30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과 그 전문성을 확보하였는가?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안전기준 검토여부 포함),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운영계획이 적절한가? • 사업(연구)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은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20
계		100

※ 1억미만 시설장비는 범용성이 강하고, 수요가 높아 중복성보다 활용성을 더 중요시함

- (심의결과)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한 후 심의결과는 구입인정, 구입불인정, 보완 후 재심 등 총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최종 결정해야 함

판정결과	구입인정	구입불인정	보완 후 재심
판정기준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제시한 구축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사유의 타당성 또는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충분한 사전조사 및 자료 부족 또는 시설장비 도입의 구체성 부족 등으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판단이 불가한 경우
계량점수	100점 중 60점 이상	100점 중 60점 미만	-

* 단, 구축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수량의 조정이 일부 필요한 경우, 적정가격 조정 후 조건부인정

4. 결과제출

- (제출기준) 부처* 또는 연구수행기관**은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에 미래창조과학부(NFEC 장비심의팀)에 제출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공동관리규정”),제2조제6호의 전문기관

** 공동관리규정 제2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부처 심의결과 제출 의무규정>

제5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추진 시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시설장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협약일(다만, 협약일 이후 별도 심의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장비, 심의일자 등 심의결과를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⑦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심의 결과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 출처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0호, 2016.5.4., 제정)

- (제출정보) 사업 및 기관/책임자 기본정보, 심의 장비(결과)정보 등 총 10개의 관리항목을 미래창조과학부(NFEC 장비심의팀)*에 제출해야 함

* RED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

○ 제출방법은 시스템 직접입력, 엑셀 업로드, API/Cloud방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관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음

○ 엑셀 업로드 기능을 사용할 시 별도의 엑셀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심의정보(10개 항목)를 충실히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함

※ 필수정보를 누락하거나 비공식 양식을 사용한 경우, 파일 업로드 시 거부될 수 있음

○ API 정보연계를 통한 심의정보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NFEC 장비심의팀)에 심의지원 안내를 요청하여 사전협의 후 진행해야 함

○ Cloud 심의지원시스템을 통한 심의정보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NFEC 장비심의팀)에 심의지원 안내를 요청하여 사전협의 후 진행해야 함

※ API/Cloud 관련 심의지원은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에서 안내

구분	정보항목	항목설명	비고
심의 일반 정보	심의번호	표준심의번호 부여체계에 따른 일련번호	ex) 기초연-16-0001 미래부-16-0002
사업 정보 등록	수행기관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명	ex) 한국기계연구원
	세부사업	특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수행하는 사업 명칭	ex)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	세부사업 수행 시 필요한 하위단위 사업 명칭	ex)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세부과제	내역사업 수행 시 필요한 하위단위 연구과제 명칭	ex) 고분자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심의 장비 정보	시설장비	시설장비의 한글명 및 영문명	ex) 통신서비스모니터 / Communications Service Monitor
	설치장소	시설장비를 실질적으로 설치한 위치(주소)	ex)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0000
	요구금액	심의 시 제출한 시설장비의 구축 예정금액	단위 : 백만원
	구축금액	심의 후 확정된 시설장비의 구축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심의결과	최종 심의결과 구입인정, 구입불인정, 보완 후 재심 중 택 1	인정, 불인정, 재심 중 택 1

5. 변경승인

- 심의 후 구입 인정받은 시설장비에 한하여 금액변경, 장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구책임자가 해당 시설장비에 대한 변경의사를 사업계획서 변경과 함께 부처 또는 연구수행기관에게 보고해야 함
 - 부처 또는 연구수행기관은 변경사항이 별도의 시설장비 심의과정을 통해 인정/불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심의를 추진할 수 있음

6. 구축포기

- 심의 후 구입 인정받은 시설장비에 한하여 미구축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해당 시설장비에 대한 구축포기 의사를 부처 또는 연구수행기관에게 보고하고, 사업계획서 변경을 추진해야 함
 - 부처 또는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책임자가 구축을 포기한 시설장비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NFEC 장비 심의팀)에 통보하여 기 제출된 심의정보를 수정해야 함

관련 양식

[양식 1] 0000년 시설장비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시설장비의 개요

구분		내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O' 표시)	구매	임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 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 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 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분	내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 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 (신규, 기존)</th> <th style="width: 20%;">성명 (채용예정자는 000)</th> <th style="width: 15%;">소속부서명</th> <th style="width: 15%;">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th> <th style="width: 15%;">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th> <th style="width: 25%;">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000)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NFEC PRISM 발간 리스트

본 PRISM의 전문은 NFEC 웹사이트(feel.nfec.go.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POLISSUE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뇌연구와 영상장비	2008-12-30
제2호	거대과학과 연구시설	2009-10-30
제3호	분석과학과 노벨상	2010-08-30
제4호	대형연구시설의 중요성 및 이슈	2011-11-15
제5호	과학기술인프라의 개념 이해와 정의 및 범위	2012-03-05
제6호	연구장비 중복성의 개념 이해와 조사방법론	2014-04-21
제7호	유전체 연구와 NGS 장비	2014-05-07
제8호	연구장비 적정가격의 이해와 산출방법론	2014-06-23
제9호	국산 연구장비의 구축현황	2014-07-21
제10호	기초연구 인프라 정의범위 및 중요성	2014-08-18
제11호	노후장비의 개념 정립 및 관리방안	2014-10-06
제12호	장비윤리(Equipment Ethics)에 관한 기본적 고찰	2015-04-24
제13호	장비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6-01-29
제14호	연구시설·장비 유사도 산정을 위한 연구	2016-04-22

RESEARCH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막스플랑크연구협회	2009-03-05
제2호	연구시설구축계획(미국 DOE)	2009-09-25
제3호	2008 연구시설계획(미국 NSF)	2009-10-12
제4호	대형연구시설로드맵 2008(영국 RCUK)	2009-10-26
제5호	연구시설인프라로드맵(유럽 ESFRI)	2009-11-16
제6호	기초과학대형연구시설로드맵(유럽 BMBF)	2009-11-30
제7호	인프라가이드북(스웨덴 RC and VINNOVA Sweden)	2009-12-28
제8호	대형연구시설인프라(그리스 GSRT)	2009-12-28
제9호	첨단분석과학 국제비교 2009(일본 JST)	2010-09-10
제10호	주요 선진국의 연구시설장비 정책동향	2011-03-25
제11호	태양광분야 연구시설장비 구축 현황 및 효율적 운영방안	2013-01-28
제12호	대형연구시설 투자의 기술성 분석체계 연구	2014-01-20
제13호	연구장비의 물리적 수명에 대한 고찰	2014-09-22
제14호	국내 연구장비 전문기술인력의 활용수요 및 적정규모 전망	2015-04-10
제15호	연구장비의 경제적 수명 산정방법 연구	2015-09-25
제16호	대형연구시설 사전타당성조사 방법론	2015-10-08
제17호	연구장비 성능평가 방법론 연구	2015-11-13
제18호	유휴·저활용장비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	2015-12-11
제19호	미국의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체계	2015-12-29
제20호	공공연구 부문의 국산장비 도입 촉진방안	2016-01-15
제21호	과학기술분야 장비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연구	2016-02-12
제22호	독일의 연구시설·장비 관리 체계	2016-02-26
제23호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소유권 전환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6-10-14

INFORMATION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세계 주요 가속기의 구축 현황	2009-09-25
제2호	세계 3대 연구소의 가속기	2009-10-26
제3호	생명연구자원시설의 현황	2010-07-15
제4호	국내의 주요 연구장비집적시설(국립대학 공동실험실습관)	2010-07-30
제5호	국내의 주요 연구장비집적시설(테크노파크)	2010-10-15
제6호	국내의 주요 연구장비집적시설(지역혁신센터)	2010-10-30
제7호	대형국제연구시설 구축의 이슈와 대안(OECD)	2011-04-26
제8호	대형연구시설 매뉴얼	2011-05-17
제9호	대형연구시설의 역할과 부가가치	2012-12-03
제10호	일본의 첨단 계측분석기술장비 개발체제 구축 현황	2012-12-10
제11호	해외 주요 대형연구시설 100선	2014-03-17
제12호	국립자연과학연구기구(NINS)	2014-04-07
제13호	이화학연구소(RIKEN)	2014-05-19
제14호	연구장비의 회계적 수명과 관리적 수명	2014-11-03
제15호	국내 연구장비 시장점유율 상위 20대 제작사	2015-08-14
제16호	20대 핵심연구장비의 국내 제작사 현황	2015-08-28

STATISTICS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25대 핵심연구장비	2010-06-30
제2호	핵자기공명분광기의 구축 현황	2011-08-01
제3호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 현황(2005~2010)	2011-11-30
제4호	2010년도 부처별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현황	2011-11-30
제5호	2010년도 연구과제 수행주체별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현황	2011-11-30
제6호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 현황(2005~2010)	2011-11-30
제7호	2010년도 부처별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현황	2011-11-30
제8호	2010년도 연구과제 수행주체별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현황	2011-11-30
제9호	교과부와 지경부의 연구시설장비 투자 현황 비교·분석	2011-11-30
제10호	최근 3년간 BT분야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현황 분석	2012-05-30
제11호	최근 3년간 NT분야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현황 분석	2012-06-29
제12호	최근 3년간 ET분야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현황 분석	2012-07-30
제13호	201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활동조사	2012-11-28
제14호	2011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활동조사	2012-11-28
제15호	201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활동조사	2012-11-28
제16호	2013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활동조사	2014-01-06
제17호	2013년도 지역의 연구장비 투자적정성 분석	2014-02-03
제18호	2014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활동조사	2015-03-27
제19호	201년도 지역의 연구장비 투자적정성 분석	2015-06-05
제20호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시설·장비 투자현황 비교·분석	2015-06-12
제21호	국가대형연구시설의 구축현황 조사·분석	2015-09-11
제22호	바이오 연구시설·장비의 투자현황	2015-10-23
제23호	2015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활동조사	2016-04-15

MANUAL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및 범위	2010-12-27
제2호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체계	2010-12-27
제3호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이행권고(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용)	2011-06-10
제4호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이행권고(연구기관용)	2011-06-21
제5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표준양식	2011-07-01
제6호	자기장 사용 안전 매뉴얼	2011-07-01
제7호	연구장비 관세감면 제도	2011-09-20
제8호	투과전자현미경(TEM)의 이해	2012-07-26
제9호	주사전자현미경(SEM)의 이해	2012-07-26
제10호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의 이해	2012-08-10
제11호	원자흡광분광기(AAS)의 이해	2012-08-10
제12호	푸리에변환적외선분광기(FT-IR)의 이해	2012-08-10
제13호	연구시설장비 단독활용의 기준(안)	2012-11-02
제14호	연구장비 이용료 산정 원칙과 사례	2012-11-02
제15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장비심의 표준양식	2013-05-20
제16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대행 표준양식	2014-02-03
제17호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산정기준	2014-02-17
제18호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사전 기획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015-01-30
제19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변경심의 표준양식	2015-02-27
제20호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및 범위(개정판)	2015-05-22
제21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구성·운영 세부지침	2015-06-26
제22호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2015-07-10
제23호	연구시설 등록 및 정보관리에 관한 지침	2015-07-24
제24호	중복성 검토 확인서 발급 매뉴얼	2015-11-27
제25호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및 등록증 발급 매뉴얼	2016-07-15
제26호	유휴·저활용장비 이천지원 관리체계	2016-10-21
제27호	1억원 미만 도입심의, 부처공통 표준 운영 매뉴얼	2016-11-28

<저자소개>

김보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연구원
e-mail. bhkim82@kbsi.re.kr

정석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심의팀장
e-mail. jsi494@kbsi.re.kr

MANUAL

No. 27 / 2016.11.28

1억원 미만 도입심의, 부처공통 표준 운영 매뉴얼

발행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Center)

전화 042-865-3588 팩스 042-865-3559

메일 prism@nfec.go.kr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FEC PRISM은 연구시설·장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발행하는

5종의 발간보고서입니다.

POLISSUE

정책이슈보고서

RESEARCH

조사연구보고서

INFORMATION

동향정보보고서

STATISTICS

통계분석보고서

MANUAL

일반지침보고서



QR코드를 찍으시면

NFEC의 시설장비전자도서관(FEEL)에서

더 많은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feel.nfec.go.kr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Center

www.nfec.go.kr

